



税金 어떻게 달라지나...

18개 稅法制定 및 改正案이 국회를 통과, 또한번의 稅制改革이 실현됐다.
 세제개혁으로 企業의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문별로 살펴본다.

公開法人 持株率 35이상은 重課

도시안에 자리잡고 있는 公害業所는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그래서 稅制면에서라도 자금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企業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을 가볍게 해주도록 法人稅法을 고쳤다.

즉 옮겨 가려고 결정한 공장에 대해서는 事前에 「地方移轉準備金」을 3년간 쌓도록 (매년 既存施設의 10%범위 · 한도 30%)했고, 이전할 때는 투자액의 8%(國產機資材를 썼을 때는

1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전 준비금에 대해 損金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고도 이전을 안하면 그동안 유예했던 세금을 金利를 붙여 추징되니 알아서 할 일이다.

기업이 영업신장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과는 달리 資產再評價 積立金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압력을 늘리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企業에 관한 稅制의 主要개정 내용

現	行	改	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人力開發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技術開發準備金 · 試驗研究費損金算入 ② 研究실험용시설 特別償却 ◆ 中小企業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特別償却率 30%인정 ◆ 換率變動差損처리의 개선 換率變動差損을 損金不認 ◆ 防衛産業의 영업세율 1천분의 15 ◆ 再評價排除資産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資産중 대동명령이 정하는 資産 ◆ 再評價積立金 資本轉入에 따른 登錄稅非課稅期間 1년 ◆ 海外投資損失準備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치기간 2년 · 환입기간 3년 		<p><①②외에 新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職業훈련소 설치에 대한 取得稅 財産稅 登錄稅 非課稅. ④ 직업훈련소 器具에 대한 物品稅 免稅 및 關稅 分割納付 ⑤ 技術檢定公團 직업훈련법인에 대한 法人稅면제 ⑥ 研究開發用 試藥類에 대한 關稅면제 <p>50%인정 個人企業統合에 의한 法人設立에 대해 登錄稅 取得稅면제 殘存상환기간에 따라 均等償却 1천분의 5 大統領이 定하는 非業務用 資産 거치기간 3년 · 환입기간 4년</p>	

寄附金の 損金 인정 범위 擴大

개정세법은 이같은 이유와 不勞所得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는 취지로 公開法人의 再評價積立金の 자본 전입을 억제키로 하고 無償株配當에 대한 소득세율을 소액 株主의 경우 현재 5%에서 10%로 大株主의 경우 현행 10%에서 25%로 크게 올렸다.

그동안 無償株配當이 잦았던 것은 大株主가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大株主에 대해 이처럼 세율을 높였으므로 앞으로 無償株配當은 상당히 억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는 한편 株式分散度를 높여 실질적인 주식의 大衆化를 촉진하기 위해 公開度에 따른 法人稅의 차등부과제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세표준이 5백만원 이상인 업체에 대한 法人稅率은 非公開法人인 경우 소득의 40% 公開法人인 경우는 27%다.

개정세법은 이것을 고쳐 공개법인이라도 大株主持株비율이 37%이상으로 公開度가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27%보다 높은 33%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다만 76년 말까지 기업을 공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大株主持株비율이 35%를 넘어도 앞으로 2년간 현행 세율, 즉 27%의 세율을 적용키로 경과 규정을 둬으로써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개정세법은 이밖에 기업저축을 늘리기 위한 稅制上的 지원제도를 마련 ①紙上配當稅의 과세를 완화하고 ②각종 준비금제도를 확대하며 ③保險差益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이제까지의 綠色 法人에서 모든 法人으로 넓히도록 했다.

紙上配當稅란 사실상 配當을 하지 않은 法人의 유보자산에 대해 配當이 있는 것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는 기업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였다가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막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 세법은 기업저축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상배당세 과세대상을 줄여 公開法人과 整理중인 회사를 제외했으며, 이제까지 可處分소득중 留保額의 50%를 무조건 과세대상으로 하던 것을 고쳐 정상배당을 하고난 후의 유보액은 비과세 토록 했다.

準備金제도는 특별한 목적이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를 損金으로 인정하여 과표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價格變動준비금(수출품 재고액의 5%) ▲「리스」산업의 시설대여 손실준비금(대여액의 2%) ▲중소기업 시설개체 준비금(期末시설액의 15%) ▲특별수선충당금(용광로등 특종업종의 수선비)제도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 기업이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촉진키 위해 기업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 損金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늘려 기부금 한도(소득금액의 5%+자본금의 1%)를 넘는 경우라도 접대비 한도(1백만원+자본금의 2%+收入金の 0.4%)에 여유가 있으면 그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公開法人에 대한 法人稅率 改正 내용

課稅標準	改 正			非公開法人
	現 行 (大株主 持 分) 51%이하	大 株 主 持 分 35%이하	大 株 主 持 分 35%이상	
500만원 이하	20%	20%	25%	30%
500만원 이상	27%	27%	33%	40%※課稅 300만원 이 하 20%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기업이 밝히기 어려운 경비를 접대비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